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84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임종득・유의동・안철수
김승수・최은석・최형두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2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재자의 정보에 대하여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4항 전단 중 “제2항의”를 “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의”로 한다.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44조의12제9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 따

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 ⑦ (생략)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신 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다만, 제9항에 따라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확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재자의 정보에 대하여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7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의----------.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	② ----------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44조의12제9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